

議案番號	210
------	-----

題 目 : 大清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案

提出年月日 : 1992년 12월 일

提 出 者 : 大 田 直 轄 市 長

□ 提 案 理 由

- 大清湖 上水源 水質改善을 위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에 依據 指定告示된 忠淸北道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에 設置되는 環境基礎施設의 維持管理 所要費用을 水道法 第 7條에 根據 3個市·道間 (大田直轄市, 忠淸南道, 忠淸北道)에 協約을 締結하여 分擔코자 함

□ 主 要 骨 子

- 協 約 機 關 : 大田直轄市, 忠淸南道, 忠淸北道
- 費用分擔對象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運營하는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의 汚廢水處理施設의 運營費
 - 下水終末處理場
 - 簡易污水處理場
 - 畜產廢水 共同處理場
- 費用分擔比率 : 原水 分擔比率 및 財政自立度를 50%適用 分擔
 - 大田直轄市 分擔額(년간) : 1, 062백만원(52. 2%)
 - 原水配分比率 및 地方財政自立度는 2年마다 相互協議 調整
- ※ 協約(案) : 全文 10조, 附則 2조(別添)

其他

○ 大清湖 特別對策地域 指定 現況

- 指定 : '90. 7. 19(環境處)
- 面積 : 729km²(忠北 666km², 大田 63km²)
- 根據 : 環境政策基本法 제22조

○ 環境基礎施設 設置 現況

施設名	施設數 (個所)	事業費 (百萬원)	運營費 (百萬원)	地域
計	7	20,181	2,034	충청북도 3개군
下水處理場	2	18,382	1,764	· 청원 1 · 옥천 1
小規模 下水處理場	5	1,799	270	· 청원 1, 보은 1 · 옥천 3

- 事業費는 國庫(70%)와 地方費(30%) 負擔

○ 自治團體別 運營費 負擔額

區分	原水使用比率 (%)	財政自立度 (%)	分擔比率 (%)	年間 分擔額 (百萬원)
計	100	100	100	2,034
受益者	小計	99.4	84.1	91.7
	大田直轄市	63.8	40.6	52.2
	忠淸南道	16.8	21.6	19.2
	忠淸北道	18.8	21.9	20.3
忠北 3 個郡 (原因者)	0.6	15.9	8.3	168

大清湖 特別對策地域内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案)

大清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分擔에 관한協約書

第1條(目的) 本 協約은 大清上水源의 水質을 改善하기 위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 22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告示된 大清湖上水源水質保全 特別對策地域안에 設置되는 下水處理場 等 環境基礎施設의 運營·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을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및 忠淸北道知事が 分擔함에 있어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遵守義務)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및 忠淸北道知사는 本協約을 誠實히 遵守할 義務를 지며, 環境基礎施設의 運營機關인 忠淸北道는 水質改善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を 하여야 한다

第3條(費用負擔對象施設의 範圍) 本 協約에 의하여 運營·管理費를 分擔하여야하는 施設은 特別對策地域안에서 發生하는 汚·廢水(工場廢水는 除外한다)를 處理하기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運營하는 다음 각호의 施設(이하 “分擔對象施設”이라 한다)로 한다

1. 下水終末處理場
2. 簡易污水處理場
3. 畜產廢水處理施設 및 畜產廢水 共同處理場

第4條(運營費 總額의 算定) ① 忠淸北道知事는 每年 9월 말까지 다음
年度의 分擔對象施設에 대한 運營 · 管理費의 總額을 1會計年
度 單位로 算定하여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②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對象施設의 運營 · 管理費는 施設
의 種類別로 人件費, 電力費, 藥品費, 슬리지 處理費, 修繕 · 維
持費, 其他 費用等으로 區分하여 算定하여야 한다

③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運營 · 管理費 總額은 相互 協議에
의하여 이를 確定한다

第5條(運營 管理費의 分擔比率)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運營 · 管理費
의 總額은 別表 1의 方法에 의하여 算出되는 比率에 따라 分
擔하는 것으로 한다

第6條(分擔額의 納付)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및 忠淸北道知事
는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運營 · 管理費의
分擔額을 分期初月 以內까지 忠淸北道 大淸湖 特別對策地域
環境基礎施設 運營 · 管理 特別會計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7條(豫算編成) 分擔對象施設의 運營 · 管理에 따른 分擔額은 忠淸
北道特別會計에 編成 · 運營한다

第8條(精算) ① 忠淸北道知事는 每年 12월 31일까지 分擔對象施設運營 · 管理費 執行內譯 및 精算內譯을 會計年度 基準으로 作成하여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精算結果에 따라 運營 · 管理費의 過不足이 發生한 때에는 다음 會計年度의 分擔額에서 이를 加減한다

第9條(分擔要請 및 對象施設의 調整) ① 分擔의 基準이 되는 原水配分量 및 地方財政自立度는 別表 2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이는 2년마다 相互 協議에 의하여 調整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自治法 第140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調整한다

第10條(其他協議) 本 協約書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는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및 忠淸北道知事が 協議하여 決定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協約은 締結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92년중 稼動施設에 대한 運營費) ① 1992년 12월 31일 以前에 稼動되는 分擔對象施設에 대하여는 우선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으로 이를 執行한다

② 忠淸北道知事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92년도 運營·管理費 執行內譯을 1993년 2월 28일까지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③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는 제 2항의 規定에 의하여 運營·管理費 執行內譯을 通報받은 때에는 6월이내에 同 運營, 管理費를 제 5조의 規定에 의한 分擔比率에 따라 忠淸北道 特別會計에 納付하여야 한다

1992. 12.

大田直轄市長 (印)

忠淸南道知事 (印)

忠淸北道知事 (印)

〈 題目 1 〉

環境基礎施設 運營・管理費 分擔方法 (第5條 關聯)

$$\text{“甲”自治團體 負擔額} = [\alpha \times TC] X_1 + [\beta \times TC] X_2$$

여기서

$$\alpha = 0.5 \quad (\text{原水配分量 比重})$$

$$\beta = 0.5 \quad (\text{財政自立度 比重})$$

TC = 年間 總 運營費

X₁ = 原水配分量 加重値(%)

$$X_1 = \frac{\text{“甲”自治團體 原・淨水 紿水量}}{\text{自治團體別 原・淨水 配分量의 合計}} \times 100$$

X₂ = 財政自立度 加重値(%)

$$X_2 = \frac{\text{“甲”自治團體 財政自立度}}{\text{自治團體別 財政自立度의 合計}} \times 100$$

< 別表 2 >

原・淨水配分量 및 地方財政自立度(제9조 관련)

가. 原・淨水配分量

(單位 : 천 m³/日)

區 分	原水・淨水	加重値 (%)	備 考
計	674	100	
大田直轄市	430	63.8	
忠清南道	113	16.8	
忠清北道	127	18.8	
忠北3郡	4	0.6	

※ 基準年度 : 1992

나. 地方財政自立度

區 分	財政自立度 (%)	加重値 (%)	備 考
計	185.8	100	
大田直轄市	75.4	40.6	
忠清南道	40.1	21.6	
忠清北道	40.6	21.9	
忠北3郡	29.7	15.9	

※ 最近 5年間 ('86 - '90)平均値

大清湖 特別對策 環境基礎 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의 件

審　查　報　告　書

1993年　2月　　日

文教・社會 委員會

大清湖 特別對策 地域內 環境 基礎 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의 件

審　　查　　報　　告

1993. 2. 18.
文教社會委員會

I. 審査經過

가. 提案日字 署 提案者 : 1992年 12月 11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附日字 : 1992年 12月 12日

다. 上程日字 : ○ 第 1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 10次 文教社會 委員會 ('92. 12. 21)

上程, 審查, 留保

○ 第 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 5次 文教社會 委員會 ('93. 2. 18)

上程, 審查, 修正議決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環境綠地局長)

1. 提案理由

- 大清湖 上水源 水質改善을 위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 22條에
依據 指定告示된 忠清北道 大清湖 特別對策地域內에 設置되는

環境 基礎施設의 維持管理 所要費用을 水道法 第 7條에 根據 3個 市·道間(大田直轄市, 忠淸南道, 忠淸北道)에 協約을 締結하여 分擔코자 함.

2. 主要骨子

- 協約機關 : 大田直轄市, 忠淸南道, 忠淸北道
- 費用分擔對象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運營하는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의 汚廢水處理施設의 運營費
 - └ 下水終末處理場
 - └ 簡易污水處理場
 - └ 畜產廢水 公同處理場
- 費用分擔比率 : 原水 配分比率 및 財政自立度를 50%適用 分擔
 - 大田直轄市 分擔額 (년간) : 1,062백만원(52.2%)
 - 原水配分比率 및 地方財政自立度는 2年마다 相互協議 調整
- ※ 協約(案) : 全文 10조, 附則 2조(別添)

3. 關聯參考事項

- 大淸湖 特別對策地域 指定 現況
 - 指定 : 90. 7. 19 (環境處)
 - 面積 : 729km²(忠北 666km², 大田 63km²)
 - 根據 : 環境政策基本法 第 22條

○ 環境基礎施設 設置 現況

施設名	施設數 (個所)	事業費 (百萬원)	運營費 (百萬원)	地域
計	7	20,181	2,034	忠清北道 3個郡
下水處理場	2	18,382	1,764	· 청원 1 · 옥천 1
小規模 下水處理場	5	1,799	270	· 청원 1, 보은 1 · 옥천 3

- 事業費는 國庫(70%)와 地方費(30%) 負擔

○ 自治團體 運營費 負擔額

區 分	原水使用比率 (%)	財政自立道 (%)	分擔比率 (%)	年間 負擔額 (百萬원)
計	100	100	100	2,034
受 益 者	小計	99.4	84.1	1,866
	大田直轄市	63.8	40.6	1,062
	忠清南道	16.8	21.6	390
	忠清北道	18.8	21.9	414
忠北 3 個郡 (原因者)	0.6	15.9	8.3	168

III.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專門委員 : 金鎮鎬)

- 本案件은 大清湖 水質改善을 위하여 大清湖 特別 對策地域內에 設置되는 環境基礎施設의 維持管理 費用을 해당 地方自治團體간 共同分擔키로 協約을 締結함에 있어 地方自治法 第35條의 規定에 따라 當議會의 同意를 구하려는 内容이 되겠음.
- 먼저 本 協約 締結 推進 經過에 대하여 簡略하게 報告 드리겠습니다.

政府에서는 맑은물 供給을 위하여 우리나라 最大의 광역上水源인 大清湖와 팔당호 周邊을 上水源 水質保全 特別 對策地區로 指定('90. 7. 19. 環境處 告示 第 90-15號)하고 이 地域 안에서의 各種 開發行爲등을 強力 抑制함은 물론 下水終末處理場, 畜產廢水 處理場등 環境 基礎施設의 建設에도 主力하였습니다.

그 結果 特別對策地域內 主要地點에 상당수의 環境基礎施設이 建設되거나 建設이 推進되는등 上水源 水質保全에 대한 政府의 積極的인 意志를 보여주었음.

그러나 이러한 環境基礎施設의 運營費負擔에 관하여는 깨끗한 環境保全을 責任져야할 中央政府와 關聯 施設을 保有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汚染者), 上水源을 使用하는 地方自治團體(受惠者)간에 利害關係가 상충되어 合意點을 찾지 못하였던 바, 각기 主張內容을 要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中央政府 : 環境基礎施設 設置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70%) 하였으므로 이의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는 國家財政 形便상 負擔이 어려우니 汚染者와 受惠者등 關聯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에 의하여 解決해야 될 問題임.
- 汚染者 : 上水源 保護에 따른 各種規制 등으로 開發이 制限되는 등 關聯 地域住民의 不滿이 高潮되고 있으며 또한 環境基礎施設의 運營에 따라 깨끗해진 물은 결국 廣域自治團體(受惠者)가 惠澤을 보게되며 地方財政의 形便으로도 負擔이 어려움.
- 受惠者 : 環境問題는 基本的으로 原因者が 責任이 있으며, 原水대를 負擔하고 있으므로 環境基礎施設 運營費의 負擔은 2중으로 負擔하는 結果임. 또한 受惠者도 下水處理를 위하여 莫大한 豫算을 投入하고 있음.

따라서 原因者が 1次적으로 責任을 지고 負擔을 하여야하나 地方財政形便上 어려울 경우 國庫支援이 바람직함.
- 韓國水資源公社 : 現在 받고 있는 원수대는 赤字임. 따라서 環境基礎施設의 運營費를 負擔할 경우 원수대를大幅 引上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經濟波及效果가 憂慮됨.

이러한 각자의 立場을 調整하기 위하여 1990. 9. 26부터 1992. 11. 25까지 10차례에 걸친 中央政府 主管하에 協議를 繼續하였는바

결국 國土開發研究院(K.D.I)의 用役結果에 따른 汚染者와 受惠者간의 共同負擔原則에 合意하고 本 協約案을 締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다음은 협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本 協約締結의 目的과 遵守義務를 案 第1條와 2條에서 規定하고 있는바 環境基礎施設의 運營, 管理에 所要되는 費用

을 分擔함에 있어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該當 地方自治團體는 本 協約을 誠實히 遵守할 義務를 지며

환경基礎施設 運營主體인 忠清北道 知事는 大清湖 水質改善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を 하여야한다 라고 遵守義務를 規定하고 있음.

그러나 遵守義務 規定에 대하여는 漠然한 原則의인 事項만을 規定한 것으로서 經費를 分擔하는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의당

本 經費 分擔에 따른 施設稼動의 適正性 與否를 確認할 權利가 주어졌다 할 것이므로 放流水 水質檢查등 施設稼動의 適正性

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制度적 名文規定이 있어야 할 것으로思料됨.

둘째, 經費分擔 對象施設의 範圍에 관한 內容으로서 經費分擔 對象施設을 大清湖 水質保護 特別對策地域안에 設置된 下水處

理施設, 簡易污水處理施設, 畜產廢水處理施設 및 畜產廢水共同處理施設이 되겠으나 本 協約에 따라 '93年度에 負擔하여야 할施設은 下水處理 2個所, 簡易污水 處理施設 5個所등 總 7個所가 되겠음.

셋째, 運營費 總額의 算定基準에 대한 內容을 案 第4條에서 規定하고 있는바

運營費 總額의 算定은 忠清北道支社가 각 施設별로 所要되는人件費, 電力費, 藥品費等 諸般經費를 提出하여 算定하되 1會計

年度 單位로 算定하며 該當自治團體간 相互協議에 의하여 確定토록 하고 있음

넷째, 運營費의 分擔比率에 관한 内容으로서 運營費의 分擔은 受惠者와 汚染者 사이의 費用 分擔 基本要素인 受惠程度(原水

使用量), 負擔能力(財政 自立度), 汚染度 및 機會費用을 充實히 反映함으로써 最適이라고 判斷된 國土開發研究院 用役結果 第4

案이 採擇되었는 바, 大田直轄市의 分擔比率은 算定된 運營, 管理費 總額의 52.2%가 되겠음.

그러나 이러한 基準은 環境政策基準法 第7條에 明示하고 있는 汚染原因者 經費負擔 責任原則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비록 汚染者측의 財政形便상 한시적으로 適用하는 不可避한 措置라

하나 環境保全에 관한 問題를 繼續하여 大清湖와 팔당호로만 局限 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環境政策 基本法에 立脚한 經費

負擔이 充實히 移行될 수 있는 方案이 研究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됨.

다섯째, 分擔額의 納付, 豫算編成, 精算등에 관한 内容으로서 分擔額의 納付는 本 運營, 管理費를 別途로 管理하기 위하여

設置된 特別會計에 每 分期初 月 以前까지 4회에 걸쳐 分納토록 하고 있으며 忠淸北道 知事는 執行內譯과 精算內譯을 作成하여

今年 12月31日까지 大田直轄市長 및 忠淸南道知事에게 通報토록 하고 있음.

여섯째, 分擔 比率의 再 調整에 관한 内容으로서 分擔 比率의 基準이 되는 原水配分量 및 地方財政自立度를 每 2年마다 相互

協議에 의해 재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人口增加, 地方財政 與件 變化등에 따라 發生될 수 있는 變動要因을 合理的으로

調整키위한 것으로서 關聯自治團體간 協議가 成立되지 않을시는 地方自治法 第 140條의 規定에 따라 內務部長官에게 調整要請토록 하고 있음.

일곱째, 本 協約書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에 대하여는 각 自治團體간 協議에 의하여 決定토록 하고 있으며 其他 '92年度 中

施設稼動에 대한 運營費에 대하여는 優先 該當 自治團體의豫算으로 充當하며 93년도에 이를 納付토록 附則으로 規定하고 있음.

- 以上에서 報告드린 바와 같이 本 協約書 同意에 관한 件은 최근에 이르러 環境 保全 問題가 단순히 快適한 環境을 保全한다는

次元을 넘어선 우리의 生存權과 直決된 重大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現 時点에서 불가피한 措置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協約書 締結過程에서 與論된 다음과 같은 問題點도 看過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協議過程에서 提起된 主要 問題點을 報告 드리면

첫째, 受惠者 負擔에 대한 法的根據 未洽입니다.

우리나라 環境保存에 대한 事項을 基本적으로 規定하고 있는 環境政策 基本法은 汚染原因者가 그 費用을 負擔토록 責任限界

를 分明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地方自治團體간 意見이 相衡되자 水道法을 改正하여 受惠者도 그 費用을

分擔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本 環境 基礎 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件이 비단 大清湖와 팔당호에 국한되어 있는 問題만이

아닌 대부분의 上水源이 數個의 地方自治團體에 걸쳐 있음을勘案할 때 彌縫策에 不過하다 할 수 있으므로 環境政策의 基本

原則인 環境政策 基本法 第7條에 의한 汚染者 負擔原則이 履行될 수 있는 制度的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受惠者 分擔에 따른 公平性 缺如입니다.

일명 受惠者로 指稱되고 있는 當市에서도 水質改善을 위하여 自體의인 下水處理施設을稼動하는등 많은豫算을 投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原因者·受惠者共同分擔의 原則이라는 論理라면 이에 相應하는 費用을 錦江下流地域의 地方自治團體

로부터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또한 原水 使用에 있어서도 費用을 支拂하고 使用하고 있으므로 環境基礎施設의 運營費까지

分擔한다함은 二重, 三重의 負擔이라 할 수 있으며 가뜩이나 地方財政自立度가 貧弱한 地方自治團體에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를 負擔케 함으로써 地方自治團體간에 葛藤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광역 上水源의 水資源管理는 국가가 擔當하는 方案이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料됩니다.

- 以上과 같은 事項을 綜合檢討하여 볼 때 本大清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事項은 지난 90年 9月

부터 92年 11月까지 2년여에 걸친 長期間의 協議끝에 到達된 結論으로서 當市에서도 收容할 수밖에 없는 立場으로 볼 수

도 있겠으나 費用 負擔의 限界設定등 보다 더 根本의in 問題 解決에 많은 研究와 努力이 있어야 할 것으로 料됩니다.

IV. 討論要旨 : 省略

V.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 요금에 環境基礎施設運營費 分擔까지 합하면 市民의 負擔이 너무 과중함.◦ 環境基礎施設費의 負擔은 環境政策基本法 第 7條에 依據 原因者負擔이 타당하며 따라서 地方財政이 빈약한 地方自治團體에 負擔시키는 것은 부당함.◦ 10억원의 大田市 負擔은 大田市豫算의 1/70에 해당하는데 地方財政이 貧弱한 우리市로 써는 부당함. 中央政府가 負擔도록 계속적인 노력요함.◦ 본건 運營費 負擔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으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처리할 것을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성사시키기지 못한점 죄송◦ 지속적으로 環境處와 관련 부처에 建議내지는 協議를 계속 하겠음.

VI. 審査結果：修正案議決

VII. 修正案의 要旨

가. 提出日字 吳 提案者 : 1993年 2月 18日
文教社會 委員長

나. 修 正 理 由 : 別 添

다. 修 正 主 要 骨 子 : 別 添

VIII. 其他 必要한 事項 : 罷 음

大清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案에 대한 修正案

提出年月日 : 1993. 2. 18
提 出 者 : 文教社會 委員長

1. 修 正 理 由

- 忠淸北道 大淸湖 特別對策地域내에 設置되는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따른 施設稼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 본 協約書 부칙에 유효기간을 두어 유효기간 경과후의 適用에 대하여는 當 議會의 재 동의를 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 環境基礎施設의 運營狀況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是正事項이 발견된 때에는 동 會計運營기관에 是正을 요구하고, 運營機關에서는 是正結果를 關係 機關에 통보도록 規定(案 第 8條)
- 本 協約書의 適用期間을 '93. 12. 31 까지로 명시(附則 案 第3條)

大清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案에 대한 修正案

大清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案중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 案 第 8條 題名중 “精算”을 “精算 및 施設運營의 確認”으로 하고
第 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大田直轄市長, 忠清南道知事, 忠清北道 知事는 施設의 運營狀
況 및 精算內譯을 確認할 수 있으며 是正 事項이 發見될 때
에는 同會計 運營機關에 是正을 要求하고, 運營管理機關에서
는 是正結果를 關係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

- 案 附則에 第 3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3條 (유효기간) 본 協約書의 유효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修 正 案 對 比 表

原 案	修 正 案
<p>第8條(精算) ①(생략) ②(생략) (新設)</p> <p>부 칙</p> <p>第1條 (시행일)(생략) 第2條 ('92년중 가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신설)</p>	<p>第8條(精算 및 施設運營의 確認) ①(現行과 같음) ②(現行과 같음) ③ 大田直轄市長, 忠淸南道知事, 忠淸北道知事는 施設의 運營狀況 및 精算內譯을 確認할 수 있으며, 是正事項이 發見될 때에는 同會計 運營機關에 是正을 要求하고, 運營管理機關에서는 是正結果를 關係機關에 通報하여야 한다.</p> <p>부 칙</p> <p>第1條 (시행일) (현행과 같음) 第2條 ('92년중 가동시설에 대한 운영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3條 (유효기간) 본 協約書의 유효기간 은 199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p>